

낚시터업 변경 [] 허가 [] 등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5일
------	-----	-----	---------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낚시터	허가 또는 등록 번호	년도	낚시터업 허가(등록) 제 호
	변경하려는 사항	허가(등록)사항	
가.		가.	
나.		나.	
변경 사유	가.	가.	
	나.	나.	
	다.	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0조제1항 후단 및 제16조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터업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낚시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1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자로부터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기안·결재	→	허가증 또는 등록증 작성	→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시·군·구)		처리기관 (시·군·구)		처리기관 (시·군·구)		처리기관 (시·군·구)		신청인